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애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9월 25일

발의자 : 경수현, 권영애, 김육영, 박영섭,  
양순임, 오중균, 이호건, 임태근,  
정기혁, 정병기, 정해숙, 진선아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및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,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(안 제8조)

다. 표창의 취소(안 제1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민
2.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3.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
4. 성북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
5. 의회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제2조제1항제5호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표창의 취소)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표창대상)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, 단체,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4조(표창권자)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</p>	<p>제2조(표창대상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특별시 성북구민</li> <li>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</li> <li>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</li> <li>성북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</li> <li>의회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</li> </ol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표창권자) ----- ----- 의장----- -----</p>

<p>다)으로 한다.</p>	<p>-----.</p>
<p>제6조(상장 수여대상)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p>	<p>제6조(상장 수여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 략) 2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 의회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제2조 제1항제5호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5조(표창의 취소)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</li> <li>2.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</p>

제15조 · 제16조 (생 략)

한다. 다만, 상장 ·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